

소 장

원 고 O O O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 - OOO)

피 고 △△세무서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 - ○○○)

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00. O. O.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파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워 인

1. 처분의 경위

- 가. 원고의 전 남편이던 소외 강□□는 ○○가정법원에 원고와의 이혼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20○○. ○.경 △△세무서에 '원고가 타인명의를 빌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양 받아 이를 전매하여 양도소득세를 탈세하고는 전매차익 8억원을 가지고 가출하였다'는 내용의 진정을 한 후, △△세무서에 출석하여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습니다(갑제1호증 : 조사복명서).
- 나. 이에 △△세무서는 위 소외인을 불러 위 진정내용을 조사하였고, 피고는 20

○○. ○. ○.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인 양도인을 원생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금 ○○○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·고지하였습^{*} (갑제2호증의 1: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, 갑제2호증의 2: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).

2. 이 사건 청구의 경위

- 가. 원고는 19○○. ○. ○.경 소외 강□□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고 생활하던 중, 20○○. ○.경 위 소외인의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두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여 ○○도 ○○시 ○○길 ○○에 월세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. 원고는 위 가출 직후인 20○○. ○. ○. 서울가정법원에 위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20○○. ○. ○.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위 소외인이 이에 항소하여 결국 20○○. ○. 스. 서울고 등법원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(갑제3호증의 1, 2:각 판결문).
- 나. 그 후 원고는 20○○. ○. 말경 원고 소유로 되어있던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☆☆아파트 3층 303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확인결과 △ △세무서가 20○○. ○. ○. 위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. 이에 원고는 △△세무소에 압류경위를 문의하였는바, △△세무소의 설명은 위 소외인이 '원고가 타인명의를 빌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양받아 이를 전매하여 양도소득세를 탈세하고는 전매차익 8억원을 가지고 가출하였다'는 내용의 진정을 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.

3.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

- 가.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과세처분
- (1) 피고는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양도자라고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 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. 그러나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했던 사실도 또한 그 양도과정에 관여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. 심지어 그 존재조차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계기로 알게 된 것입니다(갑4호증의 1, 2:각 등기부등본).
- (2) 위 소외인은 원고와 이혼소송 계속 중, 원고에게 악감정을 품고 △△세무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진정을 하였던 것인데 △△세무서는 원고를 불러원고의 전매사실을 문의하여 봄이 없이 만연이 위 소외인의 진정내용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. 또한 위 진

정내용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△△세무서는 위 소외인의 진술과 별지왕 기재 부동산의 양수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진정내용이 성이 없다고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속연도를 19○○.경으로 하여 추정세액으로 금 ○○○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(갑제1호증:조사복명서, 갑제5호증:사실내용확인요구).

(3) 결국,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입니다.

나. 송달의 부적법성

- (1) 피고는 20○○. ○. ○.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○○시 ○○구 길동 ○○ ☆☆아파트 303호로 송달하였습니다. 그러나 위 송달당시, 원고 는 위 장소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며 위 장소가 원고의 주민등록지도 아니었 습니다.
- (2) 원고는 20○○. ○.경까지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중 원고는 20○○. ○.경 위 주소지를 가출하게 되었고 이 후 ○○도 ○○시 ○○길 ○○소재 월세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. 당시 원고는 이혼소송 등 신변문제로 주민등록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, 위 소외인의 신고로 원고의 위 주소지 주민등록이 20○○. ○. ○. 직권말소되었습니다(갑제6호증:주민등록초본).
- (3) 그런데 위 소외인은 자신 혼자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☆☆아파트 3동 303호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는데, △△세무서는 위 동아아파트 3동 303호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위 소외인이 이를 수 령한 것입니다. 따라서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위 세금부과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(갑제7호증:사실증명).
- (4)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한 송달에 의한 것으로서 그 하 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입니다.

4. 확인의 이익

가.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수원지방법원에 위 소외인 소유인 ○○시 ○○구 ○ ○길 ○○ ★★아파트 105-1052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둔 상태입니다. 원고는 위 소외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해 위자료 금○○○원, 재산분할 금○○○원, 양육비 금○○○원 등을 지급 받고자 위 가처분을 하 였고, 20○○. ○. ○.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(20○○타경○○○○5). 위 경매절차에 따라 위 소외인 소유의 위 부동산은 ○○○원에 낙찰 되었고, 위 금원에서 임차보증금 ○○○원 등을 공제한 잔액이 원고에게 배당돌 이 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기해 원 위 가처분채권을 압류하여 배당받으려 하고 있습니다(갑제8호증:경위서, 갑제 9호증:등기부등본). 현재 위 경매절차에 따라 원고는 금 ○○○원을 배당받았으나 위 법원은 위 △△세무서의 압류에 따라 이를 공탁해 둔 상태입니다(갑제10호증:배당표).

나. 결국 원고는 위 당연무효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외관에 따라 그 재산이 현실적으로 집행될 위험성이 계속하여 상존하고 있으므로, 원고는 위 양도소 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.

5. 결 론

결국, 피고가 20〇〇. 〇. 〇.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의 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제1호증

1. 갑제2호증의 1

1. 갑제2호증의 2

1. 갑제3호증의 1, 2

1. 갑4호증의 1, 2

1. 갑제5호증

1. 갑제6호증

1. 갑제7호증

1. 갑제8호증

1. 갑제9호증

1. 갑제10호증

조사복명서

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

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

각 판결문

각 등기사항증명서

사실내용확인요구

주민등록초본

사실증명

경위서

등기사항증명서

배당표

첨 부 서 류



1. 위 입증방법

각 1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납부서

1통

20ㅇㅇ년 ㅇ월 ㅇ일

원 고 ㅇ ㅇ ㅇ (인)



부동산의 표시

- 1.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◎◎아파트 ○○○-○○○호(42평형)
- 2. ○○도 ○○시 ○○동 ○○ ◎◎아파트 ○○○-○○○호(48평형). 끝.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제9조 ~ 제34조
비 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396조)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제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 법원임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제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